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9 -

“영유아 육아도우미, 비용부담 줄이고 신뢰 높이겠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 15% 세액공제’ 공약

- 맞벌이 영향으로 아이 돌봄 수요 증가, 공급은 부족...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해 대부분 맞벌이 가정 제외
- 영유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어린이집·유치원과 동일 수준 세액공제 적용, 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 및 건강 상태 확인 제도 강화·안전보호조치 교육 강화 등 비용부담 완화, 신뢰 향상 공약



더불어민주당

나를 위해 이재명 소확행 공약 89

육아도우미 비용 15% 세액공제
맞벌이·한부모 가정 영유아 자녀 대상
신원확인·건강진단 발급 및 안전교육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 15% 세액공제’ 공약을 발표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도우미 이용 비용의 15%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육아도우미의 신원확인 제도 및 안전보호조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이돌봄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공백 현상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저출생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기 염려되는 영아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영유아,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틈새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일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민간 육아도우미에 자녀돌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존재하나,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주된 아이돌봄 수요자층인 맞벌이 가구 등은 정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공공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민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각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육아도우미 비용 및 걱정을 덜고 돌봄공백을 메우겠다” 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라면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연간 최대 45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세액공제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기존 조세제도와는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비용에는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15%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육아도우미의 신원확인 제도와 안전보호조치 교육 강화도 약속했다.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확인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제도를 활성화해 도우미의 신원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육아도우미 교육 역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겠다” 며 제도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 제도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비용부담 완화와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나아가 돌봄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돌봄노동의 공식화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확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참 고 자 료

▣ 공약 세부 내용

○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아이돌봄 비용 연말 세액공제 15% 추진**

- (대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대상, 소득제한 없음
- (지원) 돌봄비용 세액공제 15%* 적용 (연간 최대 45만 원 세액공제)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현행 세액공제 제도 | | 대 상 | 공제 금액한도 | 세액공제율 |
|------------|----------------|---|-----------|-------|
| 일반 교육비 | 취학전아동 (영유아) |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 | 1인 300만 원 | 15% |
| | 초·중·고 | 수업료·등록금, 급식비, 방과후수업료, 교육구입비 체험학습비(한도 :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학교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등 | | |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당해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소득세법상 여러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 공제의 한 항목임. (카드납부 시 중복 공제 가능)

○ **민간 아이돌보미 신원확인 강화 및 아이 안전 보호 조치 교육 제공**

- (신원확인) 여가부에서 신원확인증명서·건강진단서 발급('22~) → 홍보 및 강화
- (교육제공) 아동의 응급상황 시 안전교육 강화
- (근거법령) 아이돌봄지원법(2022.01.01. 시행)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발급

▣ 근거법령: 아이돌봄지원법(시행 2020. 11. 20.)

○ **제2조(정의)**

-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함
- “육아도우미”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